

EU, 유기식품 라벨링 신규규정 합의

유 찬 회*

유럽연합 농무장관(agricultural minister)은 지난 6월 12일 유기 농산물·식품의 생산 및 라벨링에 관한 보다 단순하고 새로운 규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새로운 규정은 유기농산물 생산에 관한 목적과 원칙 그리고 기본적인 규정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새로운 수입 방침과 통제 방식도 제시하고 있다.

유기식품에는 유럽연합의 유기 로고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국가나 개별 로고를 병기할 수 있다. 생산지(원산지) 정보를 명기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성분의 95% 이상이 유기농산물인 식품만 유기식품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유기식품이 아닌 경우에는 성분 표시 표에만 어떠한 유기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사용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사용이 허가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경우도 의도적이 아닌 우연히 포함된 함유율이 0.9%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유기식품에도 적용된다.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 목록에는 변화가 없다. 또한 새로운 규정은 관련 규정을 수산물, 와인, 해조류, 효모(yeast)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hrhew@krei.re.kr 02-3299-4232

유럽연합 농업 및 농촌개발분과 집행위원인 Mariann Fischer Boel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번 합의는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서 유럽 전역의 소비자는 보다 쉽게 유기식품을 식별할 수 있고, 구입하는 식품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유기식품은 성공적이고 계속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이번의 새로운 규정이 시장 수요와 공급을 잘 연결시켜 이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규정의 세부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유기농업의 목적·원칙·생산 규정에 대해 보다 명시적인 사항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역의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
- 이 목적과 원칙이 농업 부문만이 아닌, 유기 축산·수산·와인·종자 생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유전자변형농산물 규정을 보다 명시화, 특히 유기 생산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제품 사용 금지 규정의 재확인 및 일반적인 제한 규칙(우연하게 포함된 성분 함량이 0.9% 미만)을 유기식품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존 규정의 허점(우연하게 포함된 유전자변형제품 함량이 0.9% 이상인 경우에도 유기식품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완하여 판매 금지 조치 가능
- EU 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식품에 대해 EU 로고 사용을 의무화하지만, 국가 및 개별 로고 사용을 허용하여 홍보 효과 증대
- 유럽연합 기준보다 엄격한 개별 인증 기준 허용
- 2011년까지 레스토랑과 부대 식당·매점에는 적용을 하지 않지만, 회원국이 원할 경우 자체적으로 규제 가능

- 위험성 평가에 기초한 통제 방식을 강화하고, 관리 주체를 EU 식품 및 사료 통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되, 특정한 경우는 기존의 통제 방식 유지
- 새로운 영속적인 수입 방침을 통해, 유럽 시장으로 유기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유럽연합 생산자들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생산지 표시 의무화(EU 로고를 사용하는 수입품 포함)

2005년 25개 회원국을 기준으로 약 600만 ha의 경지가 유기 방식으로 경작되거나, 이 방식으로 전환 중에 있었다. 이는 2004년에 비해 2% 이상 성장한 것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유기농을 도입한 농가 수는 6% 이상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07/807&format=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Organic Food: New Regulation to foster the further development of Europe’s organic food sector” 완역